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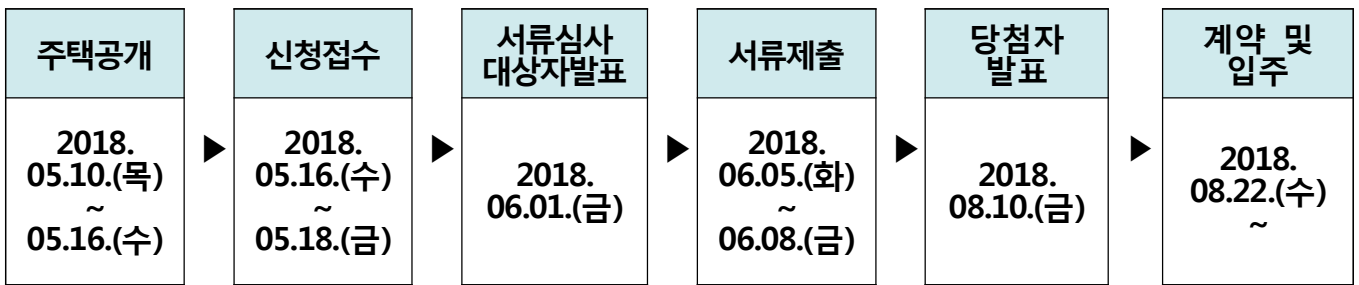
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가점 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금번 공고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잔여공실을 공급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쉐어 하우스형)의 경우 대부분은 기 입주자가 있으며 주소지에 따라 노후화의 정도가 다릅니다. **주택 공개 기간에 반드시 주택을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공급 개요

공급실수 : 576실 [남학생 232명, 여학생 344명]

| 주택유형 | | 남학생(실) | 여학생(실) | 합계 | 비고 |
|------|------|--------|--------|-----|-------------------------|
| 매입형 | 다가구형 | 160 | 271 | 431 | |
| | 원룸형 | 19 | 12 | 31 | |
| 건설형 | | 53 | 61 | 114 | 정릉,연남,공릉1, 공릉2,갈현기숙사 |
| 합 계 | | 232 | 344 | 576 | |

* 1실=1인 거주

* 다가구형은 2~4인이 1호에 거주 (거실,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하는 쉐어하우스형 주택)

* 원룸형은 1인이 1호에 거주

* 건설형은 2인이 1호에 거주 (부대시설이 있는 공공기숙사형 주택, 기숙사별 시설내역은 7페이지 참고)

■ **공급대상주택** ※ **공급주택 상세목록은 [별첨2] 주택목록 참고**

| 자치구 | 공급실수 | | | 합계 |
|------|------|-----|-----|-----|
| | 다가구형 | 원룸형 | 건설형 | |
| 강남구 | 8 | | | 8 |
| 강동구 | 13 | 5 | | 18 |
| 강북구 | 40 | | | 40 |
| 강서구 | 10 | | | 10 |
| 관악구 | 36 | | | 36 |
| 광진구 | 41 | 9 | | 50 |
| 구로구 | | 3 | | 3 |
| 노원구 | 13 | | 21 | 34 |
| 도봉구 | 77 | | | 77 |
| 동대문구 | 14 | | | 14 |
| 동작구 | 8 | | | 8 |
| 마포구 | 16 | 2 | 9 | 27 |
| 서대문구 | 14 | 6 | | 20 |
| 성북구 | 43 | 2 | 56 | 101 |
| 송파구 | 3 | | | 3 |
| 은평구 | 50 | | 28 | 78 |
| 종로구 | 20 | | | 20 |
| 중랑구 | 25 | 4 | | 29 |
| 합 계 | 431 | 31 | 114 | 576 |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거주)
- 갱신계약 조건
 - 갱신 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할증비율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
|------------------------------|--------------------------------|-----------------------------|---------------------------|
| | |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 | 55%초과 65%이하 | 20% | 40% |
| | 65%초과 75%이하 | 40% | 80% |
|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

2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05.09.) 현재 서울시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모의 주택소유여부 무관)

※ **휴학생은 2018년 2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함.**

※ **제외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 대학원생, 재외국민**

| 순 위 | 신 청 자 격 |
|-----|--|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 한부모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거주지 무관) |
|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 |
| 3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건설형은 70%, 장애인가구는 10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자산 매입형은 총자산 합산 17,8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충족 요건 건설형은 총자산 합산 2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충족</p> </div> |
| 4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한부모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 5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 6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건설형은 70%, 장애인가구는 10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자산 매입형은 총자산 합산 17,8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충족 요건 건설형은 총자산 합산 2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충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로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 거주지역은 신청인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임. 부모 양쪽의 거주지가 서울 제외 지역인 사람만 1~3순위에 해당하며 한쪽이라도 서울지역인 경우 4~6순위에 해당.

* 월평균소득은 신청인·신청인의 부모·신청인의 배우자의 세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임.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붙임 참조

- 전년도(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계청 발표

| 가구원수 | 50%이하 | 70%이하 | 100%이하 |
|-------|------------|------------|------------|
| 3인 이하 | 2,501,295원 | 3,501,813원 | 5,002,590원 |
| 4인 이하 | 2,923,452원 | 4,092,832원 | 5,846,903원 |

* 3·6순위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산 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붙임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부모님 이혼 시 등본에 등재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순위·소득·자산을 산정(등본 분리 시 분리 전 함께 거주했던 부 또는 모 기준, 등본 분리 전 부모와 함께 거주 시 신청인이 선택)

- 부모님이 재외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 시 신청인 기준으로 순위·소득·자산을 산정

3

모 집 절 차

주택공개

| | |
|------|--|
| 공개기간 | - 2018.05.10.(목) ~ 05.16.(수) 10:00~16:00 (공휴일 제외) |
| 공개절차 | - 입주요망 주택의 관할 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주택 공개일을 협의 후 해당주택에 방문 - 권역별센터 연락처 : 7페이지 참고 |
| 유의사항 |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시어 세대 내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기입주세대가 있으며 주택 공개일을 기입주세대와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다가구, 원룸과 공공기숙사의 신청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신청기간 | - 2018.05.16.(수) 10:00 ~ 05.18.(금) 17:00 | |
| 매입형 (다가구, 원룸) | 청약방법 | - 인터넷 청약(서면접수 대기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 실시)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배정함. -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우측) 인터넷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 | 유의사항 |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서 인증 가능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이전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처리(배점 차감)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형 (공공 기숙사) | 청약방법 | - 이메일 접수(주소 : youthhousing@i-sh.co.kr) - 방법 : [붙임]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완료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 |
| | 유의사항 | - 도착시간 기준으로 마감시간 이전 신청서만 인정하므로 마감시간 이전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배정함. - 신청접수 완료 여부를 당일 18:00 이후 SMS나 메일 발송하오니 받지 못하신 분은 공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3410-8550)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처리(배점 차감)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 |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 발표일 : 2018.06.01.(금) 17: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공고 및 공지 |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방법 | -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을 근거로 최종입주대상자의 3~4배수 이상을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 ① 신청순위 ② 저학년 ③ 저연령 순으로 선정 |

서류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
|-------------------------|--|---|
| 제출 기간 | - 2018.06.05.(화) ~ 06.08.(금) | |
| 제출 방법 | - 등기우편 : 2018년 06월 08일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대부 희망하우징 담당자 앞" | |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제출 | ① [별첨]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 안에 본인, 부, 모, 배우자中 소득조회대상 가구원 모두 서명 ② 재학증명서 *다음 학기 복학예정의 경우 휴학증명서를 제출 (2018년 2학기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③ 신청인기준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주소분리 시 부모님등본을 추가로 제출 ④ 신청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 시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것으로 제출 |
| | 자격별 제출 | 아래 표 참고 |

[자격별 제출 서류]

| 신청순위 | 해당자격 | 해당자격 입증서류 | 발급기관 |
|-------|------------|---|----------------|
| 1·4순위 | 수급자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본인의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주민 센터 |
| | 한부모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퇴거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구청 |
| 2·5순위 | 차상위계층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자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주민 센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3·6순위 | 일반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조회대상 가구원 모두 기재 후 서명 | - |
| | 장애인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및 [별첨]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조회대상 가구원 모두 기재 후 서명 | 해당구청·주민 센터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3·6순위 가구는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희망하우징의 경우 신청인, 부, 모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소득 및 자산 소명

| | |
|------|---|
| 일시 | - 2018.07.31.(화) 17:00 [소명자료 제출: 2018.08.02.(목)~08.03.(금)] |
| 방법 | - 대상자 개별 통보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조회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됨 |

■ 최종입주자발표

| | |
|------------|---|
| 최종입주자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일 : 2018.08.10.(금) 17: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공고 및 공지 ※ 공사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당첨자/서류심사대상자조회하기 및 ARS조회(1600-3456) 가능 |
| 최종입주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신청순위 ② 저학년 ③ 저연령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계약률을 고려하여 원룸의 경우 최종입주대상자의 1배수 내외, 다가구 및 공공기숙사의 경우 3배수 내외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함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2019.08.09.)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4

계약 및 입주안내

■ 계약 및 입주

| | | |
|------------------|--|--|
|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 2018.08.22.(수) ~ 08.24.(금) 10:00~17:00 - 계약 시 구비서류(아래) 지참 후 방문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연결) | |
| 계약 시 구비서류 | 본인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위조방지처리된 신운전면허증만 가능) ③ 신청인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
| | 대리인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가족인 경우 : 본인계약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계약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도장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 입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 2018.08.27.(월) ~ 09.27.(목) (1개월) - 해당권역 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 협의 후 입주 - 계약을 완료한 경우 입주기간 이전이라도 잔금 납부 후 해당권역센터와 협의 후 조기 입주 가능. | |

[권역별 센터]

| 신청 지역 | 해당 센터 | 전화번호 |
|----------------|-----------------|----------------|
| 강남구, 서초구 | 강남센터 | 02-2086-9800~1 |
| 강서구 | 강서센터 | 02-2657-8100~1 |
|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 관악센터 | 02-828-5100~1 |
| 노원구, 도봉구 | 노원센터 | 02-3399-0000~1 |
|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 동대문센터 | 02-490-1700~1 |
| 마포구, 용산구 | 마포센터 | 02-380-0100~1 |
| 성동구, 중구 | 성동센터 | 02-6909-9300~1 |
| 성북구, 강북구 | 성북센터 | 02-944-8000~1 |
| 송파구, 강동구 | 송파센터 | 02-3400-4700~1 |
|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양천센터 | 02-2620-6700~1 |
|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 은평센터(입주관련문의) | 02-6910-9400~1 |
| | 시설민원TF팀(주택공개문의) | 02-2271-5570~1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대상주택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 |
|------|-------------|--|-------------|
| 다가구형 | 공용사용 | 주방(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거실, 화장실 | |
| | 개인별사용 | 책상·의자, 옷장 | |
| 원룸형 | 개인별사용 | 주방(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거실, 화장실, 책상·의자, 옷장 | |
| 정릉 | 부대시설 | 4층 | 세탁실, 휴게실(여) |
| | | 3층 | 휴게실(남) |
| | | 2층 | 세탁실(남) |

| | | | |
|-----|-------|----|--|
| | 실별 사용 | | 에어컨, 주방(냉장고, 전기쿡탑), 화장실, 침대, 책상·의자, 옷장 |
| 연남 | 부대시설 | 1층 | 세탁실 |
| | 실별 사용 | | 냉장고, 전기쿡탑, 화장실, 책상·의자, 옷장 |
| 공릉1 | 부대시설 | 2층 | 공동취사장(냉장고, 가스렌지, 전자렌지), 게스트룸 |
| | | 1층 | 세탁실(세탁기, 건조기) |
| | 호별 | | 화장실, 샤워부스 |
| | 실별 사용 | | 책상·의자, 웰베드시스템(침대와 옷장 일체형) |
| 공릉2 | 부대시설 | 4층 | 건조실(빨래걸이), 냉장고 |
| | | 3층 | 회의실, 냉장고 |
| | | 2층 | 건조실(빨래걸이), 냉장고 |
| | | 1층 | 공동취사장(냉장고, 가스렌지, 전자렌지 등), 공동세탁실(세탁기, 코인건조기) |
| | 실별 사용 | | 화장실, 책상·의자, 침대, 옷장 |
| 갈현 | 부대시설 | 옥상 | 빨래 건조줄, 휴식 공간 |
| | | 3층 | 세탁실(코인세탁기-건조기포함), 공동취사장(싱크대, 쿡탑, 냉장고, 식탁) |
| | | 2층 | 휴게실(벽걸이TV, 의자, 천장 매립형 에어컨), 체력단련실 |
| | | 1층 | 커뮤니티실(회의용 테이블, 의자) |
| | 실별 사용 | | 화장실, 샤워실, 책상·의자, 옷장, 침대 |

5 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고 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이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임대주택(서울지역 내)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가 발생하는 동호가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센터를 통해 확인 후 관리비 납부에 동의하시는 분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시 계약금 반환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붙임]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 |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회원권 |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조합원입주권 |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어업권 |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분양권 |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2017. 05. 09.

 서울주택도시공사